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04 | 2025.10.27 (2025.10.20~2025.10.26)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6~'30)**」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새로 수립된 소부장 기본계획은 첨단산업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첨단산업 초혁신을 뒷받침하고, 인공지능(AI) 및 탄소중립 확산 등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정책 과제들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는 특별진찰 결과 질병의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법인이 다른 주권발행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당초 해당 주식의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내국인이 해당 업종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항공기 부품품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시기를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관세 100% 감면을 적용하고, 이후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육·해·공 모든 무기체계의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K-방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불법·허위 정보 삭제와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며,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의 과징금으로 제재하게 하는 간접적인 행정감독 기능을 신설하는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 및 개발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주체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5년도 국정감사**가 계속됩니다. 10/27(월) 10개 위원회, 10/28(화) 8개 위원회, 10/29(수) 6개 위원회, 10/30(목) 9개 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6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6~’30)」 심의·의결(산업통상자원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10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10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후환경에너지부) 11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후환경에너지부) 11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환경에너지부)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3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15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15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3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17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18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18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19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19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0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2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0인) 22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2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3인) 23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2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2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24
-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의원 등 10인) 2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25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국정감사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0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방송통신(TMT)] 해킹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합동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수립, 민·관을 아우르는 시급한 개선 과제 제시 - IT 시스템 전수점검, 정부 조사 권한 강화, 소비자 중심 피해구제 등 국민 불안 해소 -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정보보호 등급제, CEO 책임·CISO 역할 강화 등	2025-10-22
--------	--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음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음. 동 대책은 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로 제시하였으며, 이후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힘

1. 핵심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상시 취약점 탐지 체계 구축

-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들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 즉시 추진
- 통신사의 경우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주요 IT 자산에 대한 식별·관리체계 구축
- 소형기지국(펄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는 등 보다 엄격히 조치할 계획
- 보안 인증 제도(ISMS, ISMS-P)를 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모의해킹 훈련과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취약점 점검 체계도 구축

2.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재발 방지 대책 실효성 강화

- 기업의 보안 해태로 인한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는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
- 이와 함께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아울러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
- 국가정보원의 조사·분석 도구를 민간과 공동 활용하는 한편, AI 기반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하여 분석 시간을 대폭 단축(건당 14일 → 5일)하는 등 침해사고 탐지·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영역별 사고조사 전문인력을 확보·충원

3-1. 정보보호 투자확대 유도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공공부터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 인력을 정보화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26년 1분기)하고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하는 한편, 위기 상황 대응 역량 강화 훈련 고도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이버보안 배점 상향(0.25→0.5점) 등을 추진
- 민간의 경우 보안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비용이 아닌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필수 투자로 전환할 수 있게,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現 666개社 → 약 2,700여개社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하여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
-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CISO·CP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자체적인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 대상으로는 정보보호 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밀착 보안 지원을 강화

3-2.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 및 환경 조성

- 기존 레거시적인 보안 갈라파고스 환경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는 보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SW를 단계적으로 제한('26년~)하는 대신 다중 인증, AI기반 이상 탐지 시스템 등의 활용을 통해 보안을 강화
- 클라우드, AI 확산 등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획일적인 물리적 망분리를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본격 전환('26년~)하고, 클라우드 보안 요건 개선 등 민간 사업자의 공공 진출 요건 완화를 추진
- 공공분야에 사용되는 IT 시스템·제품에 대해 SW 구성요소(SBOM)의 제출을 '27년까지 제도화하고 보안 문제가 발견된 IT 제품은 공공 조달 도입 제한을 추진하며, 산업용·생활용 IT 제품군(IoT 가전 등)에 대한 보안 평가 공개 등을 추진

3-3. 보안산업을 국가전략 산업化하고 사이버안보 인력·기술 육성

-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할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AI 에이전트 보안 플랫폼 등 차세대 보안 기업을 집중 육성(年 30개社)하고, 보안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정보보호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 아울러 보안 최고 전문가인 화이트해커(年 500여명) 양성 체계를 기업 수요로 재설계하고, 정보보호특성화대학(학부, 7개교), 융합보안대학원(석박사, 9개교)을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에 특화된 보안 인재 양성 허브로 기능을 강화('26년~)하는 등 전주기 보안 인력 양성을 체계화·고도화
- 양자내성암호 기술 개발 등 국가적 암호체계 전환을 착수하고, 공공부문에서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드론 등 신기술 모빌리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26년)

4.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 국가 핵심 인프라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범부처 위원회인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위원회(위원장 : 국조실장)를 통해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기반시설의 사고 원인 조사 단계에서는 침해사고 대책본부(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으로 지정)를 활성화
- 부처별로 파편화된 해킹 사고조사 과정을 체계화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민간군 합동 조직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26~’30)」 심의·의결

- 혁신 역량,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등 소재·부품·장비의 3대 역량 강화
- '30년까지 신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10개 추가 지정
-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 및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본격 추진

2025-10-23

정부는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6~’3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이 수립된 소부장 기본계획은 첨단산업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첨단산업 초혁신을 뒷받침하고, 인공지능(AI) 및 탄소중립 확산 등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였음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6~’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 선도형 도전 기술을 개발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

- 소부장 R&D 전략방향인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하고 ①시장 선점형(첨단제품), ②시장 전환형(범용제품 고부가), ③규제 대응형(탄소중립), ④공급망 확보형(핵심광물) 4대 도전기술을 집중 개발
- 4대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하여 R&D 집중 투자, 특화 테스트베드 확충, 특허 우선 심사, 사업화 투자 등 기술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
- 소부장 기술에도 인공지능(AI)을 결합하여 기술개발 비용은 줄이고, 개발기간은 단축
- '30년까지 현 430만 건의 소재 데이터를 1,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 AI 소재 개발 모델을 민간에 개방
- 방산·항공 등 극한 환경(초고온·극저온·초고압 등)에 적용되는 게임 체인저형 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추진
- 혁신역량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도 적극 지원. 혁신 아이디어로 무장한 소부장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최고 역량을 보유한 기업까지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 '30년까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으뜸기업을 현재 100개사에서 200개사로 확대하고, 특히 세계 최초, 최고 기술 확보를 목표로 프로젝트 당 200억원 이상 R&D를 투자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現 3개 프로젝트 착수)도 본격 추진

2. 시장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공공분야의 선도 투자로 내수 신시장도 창출

- 한미 조선 협력, 인도 반도체 프로젝트 등 주요 수출국의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 이를 위해 핵심 프로젝트별로 전담 무역관(KOTRA GP 무역관)을 배치하고, 수출 마케팅, 인증, 물류 등 수출 지원프로그램을 밀착 지원

- AI, 양자, 방산, 재생에너지, 항공·드론 등 핵심 소부장을 해외에 주로 의존하는 5대 분야는 공공분야가 선도 투자하여 내수 신시장도 창출. 공공 수요처와 제조기업이 협력하여 핵심 소부장을 공동 개발하고, 군 특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실증을 적극 지원. 공공 특수 용도에 적합한 품질, 기술 기준 등도 선행적으로 마련

3.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기술-생산-구매 3대 협력을 추진

- 일본 수출규제 극복의 성공모델인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R&D 전반으로 확대. 기존 1수요기업-1공급기업 중심의 협력모델을 다수요-다공급기업 등 N차형 협력모델로 확산하는 한편, 지역전략산업 기반의 지역 주도형 협력모델, AI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형 협력모델 등 협력모델을 지역 산업 수요와 기술 수요에 맞춰 다양화
- 차세대 전략 소부장품목(예:유리기판, 전고체 전지 등)을 대상으로 해당 생태계 내 수요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10대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R&D, 실증, 투자, 규제 개선 등을 통합 지원하여 차세대 공급망 확보를 선제적으로 지원
- 수요-공급기업 간 생산 협력의 장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10개 추가 지정하고, 기 지정한 10개 단지는 지역 특성별로 고도화하여 소부장 특화단지를 앵커기업과 참여기업,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플랫폼으로 발전
-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생산협력이 최종적으로 구매로 이어지도록 소부장 정책보험 도입, 수요기업 구매자금 저리 융자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0-23 시행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의 이행,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게임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의 요건을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등으로 하고,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반 여부 확인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하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2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1-01 시행 예정
-------	-----------------------------	------------------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년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동으로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5호, 2023. 10. 31. 공포, 2025. 11. 1. 시행)됨에 따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의 조사·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며,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시기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후환경에너지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0-23 시행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추진하는 등의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산업계·연구계 등에서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514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의 주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정하고, 해당 플랫폼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 범위·방법의 설정, 공개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분야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와 관련하여 자료의 검토·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후환경에너지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0-23 시행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 검토 대상사업 및 검토기준, 심층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공청회의 절차 및 방법, 신속평가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무적으로 보수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후환경에너지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10-23 시행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준비서의 기재항목으로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를 추가하고,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받으려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준비서에는 대상사업의 목적·개요 및 해당 사업이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그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0.23. ~2025.10.24.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92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7.5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0.23. ~2025.10.24.
-------	-------------------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10.21. ~2025.12.1.
-------	-----------------------	----------------------------

특별진찰을 통해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산재 처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진찰 결과 질병의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고자 함 (안 제7조제4호)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전화: 044-202-8838, 팩스: 044-202-8091)

국토교통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0.22.
~2025.1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040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전화: 044-201-4524, 팩스: 044-201-5612\)](tel:044-201-452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2025-10-20 발의

에너지·자원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임.

한편,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및 패권국가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 자원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나날이 악화되어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첨단산업의 공급망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오랜시간 노력해 만든 산업경쟁력마저 약화 될 수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함

글로벌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 심화 및 수급 위기 시에도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자원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를가공한 자원의 국내 반입에 관세를 면제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함. 정부는 할당관세 제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중요한 품목의 수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년도 심사 체계로 인한 지속 지원 여부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근본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93조제19호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2025-10-21 발의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실질은 사원에게 출자를 환급하는 것과 같으며, 기업회계기준에도 이와 같이 반영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와 같은 취지가 불명확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이 다른 주권발행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당초 해당 주식의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도록 명시하고자 함 (안 제16조제1항제1호)

또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그 본질이 주식할인발행차금 또는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으므로,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손익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시하고자 함 (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제20조제3호)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

2025-10-21발의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실질은 사원에게 출자를 환급하는 것과 같고, 기업회계기준에도 이와 같이 반영되어 있음. 이 경우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소득이 배당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논란이 있음. 법원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라 하여 사안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보기도 하고, 양도소득으로 보기도 함(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판례상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기준이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거래형식을 임의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조세회피의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며,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또한 예외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거래로 얻은 이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매도인인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7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제3호 단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2025-10-21 발의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고율 관세 부과 등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화’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핵심 주력 산업의 국내생산 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훼손은 물론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임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주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집중되어 있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실제 생산 활동을 촉진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음. 국내생산 기지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 즉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하여 당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본 제도는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위험이 현저한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이를 통해 내국인이 해당 업종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함으로써 국내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고자 함. 아울러, 세제 혜택이 특정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내 부품·소재·장비 등을 공급하는 국내 생산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국내 부품·소재·장비 사용 비중을 요건으로 규정**하여 국내 생산기반의 확충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지원받은 생산시설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사후관리 및 추정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며, 이를 통해 실물경제의 근간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안보에 기여하고자 함 (**제100조의35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3인)

2025-10-22 발의

최근 금리·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가 '24.2/4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비수도권 인구감소 등에 따라 지방 주택수요가 둔화되는 등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 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함** (안 제71조의2제1항)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안 제77조의3)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함 (안 제98조의9)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025-10-22 발의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석유 수요는 둔화되는 반면 중국, 중동 등 역내 경쟁국의 생산시설 신증설 등으로 정유업계의 산업 경쟁력은 악화되어 유례없는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OECD, 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소비용도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유보다 낮은 가격의 중유를 원료로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경쟁력 저하를 가중함. 아울러, '원료용 중유'는 원유수입을 대체하여 안정적 원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부과로 인해 수입에 제한적임

이에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국내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임 (안 제111조의6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2025-10-22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100%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2026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여 2030년 1월 1일부터는 관세 면제를 폐지하는 일몰규정을 두고 있음

이 제도는 원재료에 비해 완성품의 관세가 더 낮은 역관세 문제를 해소하고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미국·EU 등 주요국과 FTA가 체결되면서 관세 감면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사유로 2012년부터 일몰조항으로 전환됨. 그러나 실제로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하기 어렵고, 부품이 복수국가에 걸쳐 생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FTA를 통한 무관세 적용은 어려우며, 현재도 FTA 활용률은 20% 안팎에 불과한 실정임

한편, 항공기 정비(MRO) 산업은 고부가가치 국가기간산업으로 항공기 부품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나,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반도체·배터리·항공 등 전략산업에 대한 관세 인상, 수출통제, 공급망 파편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항공부품 수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반면, 미국·EU·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은 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또는 자국 관세법을 통해 항공기 부품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며 자국 항공·MRO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한 TCA 가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조약 체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 4~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MRO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MRO 클러스터 조성, 국산부품 개발 확대, 우주항공청 중심의 소부장 자립화 정책 등을 추진 중이나,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품 수입과 관련한 최소한의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시기를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관세 100% 감면을 적용하고, 이후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해외 경쟁국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항공·MRO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89조제6항 제1호 개정)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2025-10-23 발의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에 대해 학교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그간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사용하였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액 사용료를 면제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납부 편의 제고 및 행정비용을 절감하며, 개발 전 국유재산을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국유재산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참여 개발 대상 국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기간 현실화, 개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2025-10-23 발의

현행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현재 일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치료제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고 있음

그러나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치료제 종류가 극히 적어, 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2025-10-24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조건부주식은 우수인력에게 현금 보상이 아닌 주식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미래 성장가치를 공유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벤처기업도 우수 인재 채용에 필요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과세특례가 없어 이로 인한 과세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통한 벤처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안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신설)

국방위원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2025-10-24 발의

대한민국은 2022년 방산 수출 173억 달러,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에도 95억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8위 방산 수출국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K-방산을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며, 우리 군을 “첨단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무기체계 총수명주기(Life-Cycle) 비용의 약 70%가 운영·정비(O&S)에 소요된다는 미 회계감사원(GAO) 분석처럼, 우리 국방예산도 약 60조 원 중 70% 이상이 전력운영비로 편성되어 방위력 개선을 위한 신규 전력 투자가 쉽지 않음. 또한 무기체계 정비(MRO)가 해외에 치중되어 비용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실제 우리 군이 최근 5년간 지출한 군용기 해외 정비 비용만 2조 5천억 원에 달하고, 8조 6천억 원 규모의 F-15K 업그레이드 사업 역시 장비·서비스 패키지 대부분을 미국업체가 수행하고 있음

해상 분야는 국내 기업이 미 해군 함정 MRO를 잇따라 수주할 정도로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 해군 정비 물량은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민간 이전이 지체되고 있음. 육군의 경우에도 오랜 숙원사업이던 K2 전차의 파워팩 국산화가 최근 발표된 만큼, 향후 후속 군수지원과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안정적인 정비 및 부품수급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계속된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 우리 군은 현 50만 명 규모의 상비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는 전투 임무 집중을 위해 비전투병력을 단계적으로 축소·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특히 각 군은 무기체계 정비업무를 위해 수많은 현역 정비인력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군 인력 구조 개혁과 연계해 민간에 이양·위탁함으로써 부족한 전투병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육·해·공 모든 무기체계의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첫째, 국방예산 구조를 ‘고비용 구조’에서 ‘효율적 민·군 분담’으로 전환하고 둘째, ‘전투병력 위주의 인력구조 개편’으로 첨단 강군을 육성하며 셋째, 국내 MRO 산업에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해 K-방산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025-10-20 발의

현행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및 인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024년에는 삭감되었다가 2025년에는 다시 증액되는 등 급격히 전환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유지하여 장기적 방향성을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는 1년으로 단축하여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2025-10-20 발의

현행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및 인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024년에는 삭감되었다가 2025년에는 다시 증액되는 등 급격히 전환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유지하여 장기적 방향성을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는 1년으로 단축하여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2025-10-23 발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단은 행정 심의에 의한 제한적 제재에 불과함. 그러한 행정 심의마저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본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고,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적, 의도적으로 유포(이하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라 함)하여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이하 “가해자”라 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와 사회 공동체 관점에서의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함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로 인한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한 증명되는 손해액 외에 증명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천만원까지의 법정손해액 부과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다만, 공익적 목적에 따른 정보 유포에 대해 입막음 성격의 이른바 봉쇄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봉쇄소송임을 주장할 경우 중간판결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배액 배상의 전제인 의도성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낮추고 다른 한편 의도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구제가 외면 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을 적시함

아울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 훼손 처벌에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추가함

이용자 규모가 특별히 크고 정보의 생산·유포 방식이 고도화 된 대규모 정보통신망의 등장으로 불법정보와 허위 정보의 확산이 빨라지고 피해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수단의 도입이 매우 절실해짐

본 개정안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처럼,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운영하는 이른바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불법·허위 정보 삭제와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는 법체계를 도입하였음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의 과징금으로 제재하게 하는 간접적인 행정감독 기능을 신설하고, 정보에 대한 fact-checking(사실확인) 활동을 하는 언론기관이나 인권 단체 등을 지원하여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8까지 및 제44조의20부터 제44조의27까지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0인)

2025-10-23 발의

최근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채 영화 및 비디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 의무나 불법비디오물 유통 방지 의무 등의 규제를 이행하지 않아,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 이용자 보호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자에게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등급분류의 이행과 불법비디오물 판매 등의 금지 의무를 대리 수행하게 하여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함 (안 제92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025-10-22 발의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등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그 밖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제품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미비 등의 한계가 있어 전반적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2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3인)

2025-10-22 발의

현행 법령에 따르면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외인재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성화와 해외인재 유치 업무는 그 업무계획의 수립이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계하여 운영할 때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업무협의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 구성·운영,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및 해외인재유치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와 관련해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및 활용 효과를 증대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2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2025-10-23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나, 해당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금 지원이 제한됨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석유화학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여 관련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규모 장치산업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발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2025-10-20 발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에 어려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신청 건수의 17% 이상이 소송으로 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수수료 비용 등으로 인해 15% 정도만 공인노무사에게 산재신청을 위탁하는 등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산재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2025-10-20 발의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12주를 초과하고 32주 미만인 임신부는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고자 함 (안 제74조제7항)

국토교통위원회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의원 등 10인)

2025-10-22 발의

1990년대 이후 택지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이 제정되어 이를 규율하고 있으나, 동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사업주체가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사업 실시 가능성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건설·매입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정비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 및 개발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주체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2025-10-23 발의

도시계획시설을 지하·공중 등 한정된 공간만을 이용·설치하는 경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이나 고가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공공주택사업 등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중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는 현행법에 따라 무상 취득이 가능하나, 공공시설에 대한 일관된 판단기준이 없어 유상취득 후 소송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한편 설치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이 기존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인·허가 의제 규정이 부재하여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여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안 제43조의2 신설),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안 제65조제10항 신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도로연결 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92조제1항제9호)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10. 27.(월) 10개 위원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회 10:00
	정무위	<종합감사 - 금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국회 10:00
	기재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국회 10:00
	과방위	[현장시찰] 한화우주센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방송 등	제주 10:00
	국방위	[현장시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KAI 10:00
		[현장시찰] 현대로템	현대로템 15:00
	행안위	<지방1반> 충청남도	충청남도청 10:00
		충청남도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도청감사 종료후
		<지방2반> 대구광역시	대구시청 10:00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7개 기관 포함)	국회 10:00
	농해수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 등 10개 기관	국회 10:00
	기후노동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2개 기관	국회 10:00
	국토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10:00

10. 28.(화) 8개 위원회	정무위	<종합감사 - 비금융>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회 10:00
	교육위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 등 8개 기관	국회 10:00
	외교위	<종합감사> 외교부, 통일부 등 10개 기관	국회 10:00
	국방위	[현장시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 이스 10:00
	행안위	<지방1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청 10:00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도청감사 종료후
		<지방2반> 경상남도	경상남도청 10:00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도청감사 종료후
	농해수위	<종합감사>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국회 10:00
	산자중기위	[현장시찰] 제주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10:00
	복지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8개 기관	국회 10:00
10. 29.(수) 6개 위원회	기재위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회 10:00
	과방위	<종합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우주항공청(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회 10:00
	문체위	<종합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전체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전체	국회 10:00

	산자중기위	<종합감사>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국회 10:00
	기후노동위	<종합감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국회 10:00
	국토위	<종합감사>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회 10:00
10. 30.(목) 9개 위원회	법사위	<종합감사>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 소, 대법원	국회 10:00
	기재위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8개 기관	국회 10:00
	교육위	<종합감사>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감사대상기관	국회 10:00
	과방위	<종합감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회 10:00
	국방위	<종합감사> 국방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회 10:00
	행안위	<종합감사>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회 10:00
	농해수위	<종합감사>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국회 10:00
	복지위	<종합감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기타 감사 대상기관 전체	국회 10:00
	기후노동위	<종합감사>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10:00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0/27(월) 14:00	AI×푸드 테크 융합 및 발전방안	한병도·윤준병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0/28(화) 10:00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	김원이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0/28(화) 10:00	한국형 AI 산업발전 국제세미나	유용원·김성원 의원실 등	공군호텔
	10/28(화) 13:00	K바이오 혁신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 미래로	최민희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0/30(목) 10:00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기업 책임강화를 위한 아시아 연대와 대응 국제포럼	정태호·김태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자료집 등	10/28(화)	「Data+」 제20호(2025-20호) 발간	국회도서관	
	10/28(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83호(2025-20호) 발간		
	10/29(수)	「금주의 서평」 제751호(2025-42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0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0/20(월)	「팩트북」 제119호(2025-5호)	국회도서관	
	10/2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82호(2025-19호)		
	10/22(수)	「금주의 서평」 제750호(2025-41호)		
	10/23(목)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호(2025-20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0/24(금)	방송통신 (TMT)	해킹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